

第37回

#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5月30日(月) 10時28分 開議

## 議事日程

1. 會期決定의件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93會計年度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報告의件

## 附議된案件

- |                                    |    |
|------------------------------------|----|
| 1. 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             | 1面 |
|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        | 2面 |
| 3. '93會計年度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  | 2面 |
|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 提議) .....      | 3面 |
|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    | 3面 |
| 6. '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報告의件 ..... | 4面 |

(10時28分 開議)

○議長 李斗鶴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석의원 22名中 출석의원 16名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會議 開議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朴洙徹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중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중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로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丁昌熙 議員님 外 4人으로부터 하천

법·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개정건의 요구(안)이 발의되어 '94년 5월23日 李萬魯 議員外 7人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事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 1. 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10時31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94년 5월30日부터 오는 6월8日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

## 제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 일시                                        | 부의안건                                                                                                                                                                                    | 비고                  |
|-------------------------------------------|-----------------------------------------------------------------------------------------------------------------------------------------------------------------------------------------|---------------------|
| '94. 5.30<br>(월)<br>10:00<br>개회식 직후       | ○개회식<br>○국장보고<br>1. 회기결정의건<br>2. 회의록서명의원<br>선출의건<br>3. '93회계년도결산검<br>사위원선임의건<br>4. 예산결산특별위<br>원회구성의건<br>5. 예산결산특별위원<br>회위원선임의건<br>6. '94년도제1회추<br>가경정예산(안)<br>에대한보고의건<br>※휴회결의<br>(8일간) | 제1차본회의              |
| '94. 5.31<br>(화)<br>┓<br>'94. 6. 4<br>(토) | 휴회                                                                                                                                                                                      | 상임위원회 및<br>예결위원회 활동 |
| '94. 6. 5<br>(일)                          | 공휴일                                                                                                                                                                                     |                     |
| '94. 6. 6<br>(월)                          | 현충일                                                                                                                                                                                     |                     |
| '94. 6. 7<br>(화)                          | 휴회                                                                                                                                                                                      | 예결위원회 활동            |
| '94. 6. 8<br>(수)<br>10:00                 | 1. '94년도제1회추<br>가경정예산(안)<br>2. 서울특별시종로<br>구민원심의위원<br>회조례중개정조<br>례(안)<br>3. 서울특별시종로구<br>동사무소설치조례<br>중개정조례(안)<br>4. 서울특별시종로구<br>구유재산관리조례<br>중개정조례(안)                                      | 제2차본회의              |

| 일시 | 부의안건                                                                                                                                                                                                                                                                                                                                                | 비고 |
|----|-----------------------------------------------------------------------------------------------------------------------------------------------------------------------------------------------------------------------------------------------------------------------------------------------------------------------------------------------------|----|
|    | 5. 서울특별시종로<br>구세조례중개정<br>조례(안)<br>6. 서울특별시종로<br>구세입징수포상<br>금지급조례중개<br>정조례(안)<br>7. 서울특별시종로<br>구수입증지조례<br>중개정조례(안)<br>8. 서울특별시종로<br>구중개업분쟁조<br>정위원회운영조<br>례(안)<br>9. 서울특별시종로구<br>중소기업육성기금<br>설치및운용조례중<br>개정조례(안)<br>10. 서울특별시종로<br>구에너지사용자<br>등에대한과태료<br>징수조례개정조<br>례(안)<br>11. '94년도구유재<br>산관리계획변경<br>계획(안)<br>12. 하천법·공유수면<br>관리법시행규칙개<br>정건의요구(안) |    |

##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10時32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위에 따라 玄壽漢議  
員과 玄孝善議員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93會計年度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10時32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

결산감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감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결산감사 위원 선임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종로구의회議員 3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감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감사위원 선임 운용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1항에 議長이 추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議長이 추천하겠습니다. 1지역의 李憲九議員, 2지역의 洪承台議員, 3지역의 金憲中議員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李憲九議員, 洪承台議員, 金憲中議員이 '93회계년도 결산감사委員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 提議)

(10時34分)

○議長 李斗鶴 여러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10時35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議長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鄭命浩議員, 玄壽漢議員, 羅在岩議員, 朴鍾植議員, 朴勸先議員, 千相旭議員, 玄孝善議員, 田永泰議員, 孫光一議

員 이상 9인의 議員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委員長과 간사 1인을 委員會에서 호선하고 本會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委員長과 幹事 선임을 위하여 本會議를 약3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 없으면 停會를 선포합니다.

(10時36分 會議中止)

(11時24分 繼續開議)

○議長 李斗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本會議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자이신 千相旭議員께서 나오셔서 委員長 선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議員 금번 區廳長으로부터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9명의 특별위원이 선임된바 있습니다. 그 9名中 다섯 분이 참석해서 委員長 한분과 幹事 한분을 선출했습니다. 委員長에는 玄壽漢議員님이 추대되었고 幹事님으로는 우리 朴鍾植議員이 추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委員長으로 선임되신 玄壽漢議員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난 후 幹事 선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玄壽漢 玄壽漢議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경에 委員長으로 뽑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미숙한 제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점이 오늘부터 회기 10日間이지만 그 중간에 공휴일이 많아 가지고 바쁜 일정 같습니다. 그래서 30日에서부터 한 3日까지, 4日에는 행사가 있을 것 같으니 그 기간중에 4日間 여러 동료 의원께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원만하게 예산이 심의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4년도 예산에 대

한 특별위원회 幹事로서 朴鍾植議員님께서 추대되었습니다. 이 점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幹事로 선임되신 박종식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 朴鍾植 우선 경험이 없는 저를 幹事로 추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맡았으니까 소임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하셨습니다.

#### 6. '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대한報告 의件(區廳長 提議)

(11時24分)

○議長 李斗鶴 종로구청 總務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總務局長 洪起和 종로구청 총무국장입니다. 區廳長님을 대신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斗鶴議長님! 芮相浩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議會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議員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청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議員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총 61억2,000만원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제잉여금 55억1,100만원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94년 당초 예산액 중에서 선거관리비 등 삭감경정재원 6억100만원과 '93년도 경상보조금 집행액 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본업무추진 법정경비와 필요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서울 600년 등 역점 사업의 성공적 완수

를 위한 경비와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비를 적극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이 총규모는 922억원이며 당초 예산 856억200만원에 비해서 65억9,800만원이 늘어나서 7.7% 증액이 된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6억1,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89억7,500만원에 비해서 56억4,200만원이 증가되어 7.1%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75억 8,300만원으로써 당초 66억2,700만원에 비해서 9억5,600만원이 늘어난 14.4%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61억200만원은 경상비 29억700만원, 투자사업비로 32억1,300만원을 편성해서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비 내역입니다. 우리 區 특수사업인 명품거리조성공사 등 도시시설사업비에 4억8,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원, 또 쾌적한 도심공원과 녹지공간 확충사업을 위해서 3억5,300만원, 가회동 청사신축공사 등 영선사업비 13억3,300만원, 도시가스 사업기금 등 기타 사업비 8억4,700만원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가급적 억제해서 시행중인 계속 사업에 마무리를 위주로 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주요 경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 인건비 상승분 9억3,200만원 또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9,200만원, 서울 600년과 한국 방문의 해 등 대민활동비 등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 2억9,900만원, 대민 행정 서비스 확충을 위한 행정장비 전산화 및 집무환경개선 경비 1억7,400만원, 복지사업 추진비 3억300만원과 필수기본업무 추진비 1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